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(이하 "요양급여대상"이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06 · 12 · 29, 2012 · 8 · 31> 1. 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요양급여(약제를 제외한다) : 제9조에 따른 비급여대상을 제외한 일체의 것

2. 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요양급여(약제에 한한다) : 제11조의2,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요양급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대상을 급여목록표로 정하여 고시하되, 법 제41조제

1항의 각호에 규정된 요양급여행위(이하 "행위"라 한다), 약제 및 치료재료(법 제41조제1항제2호의

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약제 및 치료재료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로 구분하여 고시한다. 다만, 보건복지

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양기관의 진료에 대하여는 행위 · 약제 및 치료재료를 묶어 1회 방문에 따른

행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 <개정 2001 · 12 · 31, 2008 · 3 · 3, 2010 · 3 · 19, 2012 · 8 · 31>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군에 대한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해당 질병군별로 별표 2 제6호에 따른 비급여대상, 규칙 별표 6 제1호사목에 따른 이송처치료 및 같은 호 아목1)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 항목을 제외한 모든 행위 · 약제 및 치료재료를 묶어 하나의 포괄적인 행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하나의

포괄적인 행위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 <개정 2001·12·

 $31,2005 \cdot 10 \cdot 11,\ 2008 \cdot 3 \cdot 3$ ,  $2010 \cdot 3 \cdot 19,\ 2012 \cdot 8 \cdot 31,\ 2014 \cdot 9 \cdot 1,\ 2015 \cdot 5 \cdot 29$ ,

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요양병원의 입원진료나 같은 항제3호에 따른 완화의료의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제2항의 행위·약제 및 치료재료를 묶어 1일당 행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1일당 행위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수 있다. <신설 2007·12·28 보건복지부령428, 2008·3·3, 2010·3·19, 2012·8·31, 2015·6·30>

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을 고시함에 있어 행위 또는 하나의 포괄적인 행위의 경우에는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를 함께 정하여 고시하여야한다. <2007 · 12 · 28 보건복지부령428, 2008 · 3 · 3, 2010 · 3 · 19, 2012 · 8 · 31>

## 제9조(비급여대상)

 $2015 \cdot 6 \cdot 30 >$ 

제8조(요양급여의 범위 등)

여대상으로 결정 또는 조정되어 고시된 것

①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(이하 <u>"비급여대상"이라 한다)은 별표 2와 같다.</u> <개정 2012 · 8 · 31>